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(이하 "자격시험"이라 한다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응시자격)

1. 대한내과학회 평생회원인 내과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내과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동안 실무에 종사한 자
 단, 소화기분과는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(전공의 수련 3년제에 한함.)
2.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 (자격인정)에 해당하는 자
3. 분과전문의 수련 및 실무기간에는 다른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제 3 조 (시험과목 및 시험방법)

1.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분과 전문 과목으로 한다.
2.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.
 단, 예측 불가한 심각 상황(예: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)으로 인하여 구술시험 시행이 불가한 경우 필기시험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.

제 4 조 (시험의 시행 및 공고)

1.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, 장소,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공고한다.
3. 자격시험 일시와 장소는 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.

제 5 조 (응시원서)

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(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원서)에 의한 응시원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내과전문의 자격증 사본
2. 별지 제9호 (내과분과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)
3. 별지 제10호 (연수평점 기록지)
 첨부 1) 연수강좌, 실습 참석 증빙서류
 - 대한내과학회 이수내역 확인서
 2) 학술대회 참석 증빙서류
 - 대한의사협회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확인서
 3) 학술대회 초록발표 증빙서류
 - 초록집의 표지(학회명, 일자, 장소 등 명기)
 - 초록 복사본
 4) 논문게재 증빙서류
 - 논문 PDF 파일 또는 게재예정증명서
4. 별지 제11호 (연수평점 이수증명서)
5.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)
6. 응시료 및 인정료는 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6 조 (시험위원의 선출)

1. 분과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, 시험의 채점, 감독 및 필기와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 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7 조 (출제 및 시험실시, 보안사항)

1. 자격시험 문제는 각 분과위원장 책임하에 분과별 출제(선택)위원이 출제하고, 각 분과위원장은 출제된 최종 시험문제를 분과관리이사에게 제출한다.
2. 자격시험은 분과관리이사 책임 하에 실시한다.
3. 출제(선택)위원은 합숙을 원칙으로 하고, 비밀이 유지되도록 서약한다.

제 8 조 (시험문제 및 배점)

1. 필기시험은 90점 만점으로 한다.
2. 구술시험은 10점 만점으로 한다.

제 9 조 (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감독)

1.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시간 내 고시장을 퇴장할 수 없다.
2. 필기시험 시작시각 이후에 응시자 입실을 허용하지 않으며, 결시로 처리한다.
3. 분과위원장은 응시부정이 없도록 시험을 철저히 감독할 책임을 진다.

제 10 조 (채점)

1. 채점은 분과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분과관리이사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자격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, 채점표 등 시험과 관련된 제반서류 일체는 대한내과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문서보관 내규에 따른다.

제 11 조 (합격자 결정)

1.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.
2.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합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.
 단, 예측 불가한 심각 상황(예: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)으로 인하여 구술시험 시행이 불가할 경우 필기시험 점수로만 합격을 결정한다.
3.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.

제 12 조 (부정행위자의 제재)

1.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 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3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4. 이외 부정행위자의 제재조치는 전문의자격시험 규정에 따른다.

제 13 조 (운영세칙)

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4 조 (부칙)

1.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칙은 2003년 1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칙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칙은 2010년 7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본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본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8. 본 규칙은 2021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9. 본 규칙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